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  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607호 2010. 1. 11.

**공 고**

제2010-15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.....	2
제2010-20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.....	3

**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**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 
 D-2일 편집·교정 → 
 D-1일 편집·교정 → 
 D일 발간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**공 고**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-15호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최근 잦은 기후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,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평상시 재난활동과 유사시 초기 수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4조 “방재단의 조직구성-300명 이하(동별10명이상, 단체 20명 이하)로 한다.
- 제5조 “방재단장 및 임원의 임기 2년, 연임할 수 있음”으로 한다.
- 제7조 “방재단 임무를 정한다.”
- 제9조 “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정한다.”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수방재과에 비치함(☎490-3420)

2010년 1월 11일

**중 랑 구 청 장**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개정이유

- 「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이를 기초로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##### 가.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(안 제3조제5호, 안 제4조제2항)

- 1)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「조세범처벌법」 및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

##### 나.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(안 제4조)

- 1) 점용료, 사용료,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(제1항)
- 2)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「조세범처벌법」 및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(제2항)

##### 다.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(안 제5조제1항)

- 1) ‘미수액 징수’ 심의 ⇒ ‘세정발전과 세입증대’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

라.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(안 제8조제2항)

- 1) 제안, 제도개선을 제외한 모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
  - 2)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
- 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에 비치함 (☎ 490-3345)

2010년 1월 11일

중 랑 구 청 장